

등록번호	총무과-43340
등록일자	2014.12.9.
결재일자	2014.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임소영	남종운	유용렬	代유용렬	김찬곤	12/12 최창식
협 조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제도 개선계획



행정관리국
총 무 과



서울중구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제도 개선계획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대상을 직무연관성을 반영하여 자격증 단순 소지자에서 직무 분야 경력자로 개선, 직무활용도 제고를 통해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기하고 복지 분야 근무 유인을 통해 복지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규칙 제41조의 2 제1항(별표 19)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안전행정부)

II 자격증 가점 개요

- 가점대상
 - 국가자격증 및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구분		가점대상	
행정직군(행정, 세무)		6급·7급	사회복지사 1급
		8급·9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및 기술직군	서울시 통합인사 직렬	서울시 자격증 가점제도 적용	
	그 외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적용	

- 부여대상 :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평정점

구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III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격증 가점은 직렬(직무) 단위로 부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가점대상이 행정직군으로 관련 직무 근무여부 관계없이 단순히 소지한 사실만으로 가점 부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대상 현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현황(※ 복지 분야 미근무자 45%)

구분	근무기간	계	5급		6급		7급		8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계	21	1	2	5	3	2	5	-	3
행정	소계	17	1	2	4	2	1	5	-	3
	3년이상	4	1	-	2	-	-	1	-	-
	2~3년	3	-	-	1	1	-	-	-	2
	1~2년	3	-	2	-	-	-	1	-	-
	1년미만	-	-	-	-	-	-	-	-	-
	미근무	7	-	-	1	1	1	3	-	1
세무	미근무	3	-	-	1	1	1	-	-	-

● 가점활용 예상자 중 복지분야 미근무자 현황(총15명 중 53%)

구분	계	6급	7급	8급
인원	8	2	5	1

- 자격증 가점제도는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로, 타 자격증(기술분야) 소지자는 관련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없어도 가점을 받고 있어 직무활용도 미흡
- 타 가점대상 자격증과의 형평성 유지 및 직무활용도 제고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제도 개선 필요

사회복지사 가점제도 운영현황

서울시		자치구			
적용여부	부여기준	적용여부		부여기준	
		적용	미적용	자격증취득	해당직무 근무
적용	해당직무 근무	21개구	4개구	12개구	9개구

IV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 가점대상을 자격증 단순소지자에서 복지 분야 직무경력자로 개선
- 직무 연관성 고려하여 "세무" 직렬 가점대상에서 제외
- 복지 분야 직무범위 부서를 지정하여 혼란 방지
- 현재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취득 준비 직원 배려 위해 일정 유예기간 부여

V 개선계획

- 자격증 가점대상 및 부여기준 변경**
 - 직무 연관성 반영하여 가점대상 및 부여기준 변경

구분	현행	변경
가점대상	행정, 세무직렬	행정직렬
부여기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취득 후 직급별 복지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복지 분야 직무범위 부서 지정 운영
 - 기획재정국 : 취업지원과(자활지원 담당 업무에 한함)
 - 복지환경국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 동주민센터 : 사회복지 업무 담당
- 시행시기 : 2016. 1. 1
 - 기존 자격증 소지자 및 현재 자격증 취득 준비 직원 배려위해 가점제도 개선안 시행 1년 유예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규칙 개정(안)

●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1조의2제1항 관련)

1.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가. 5급부터 9급까지

구분	계급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직렬	직렬			
현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개정	행정,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주) 단,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취업지원과(자활지원 담당 업무에 한함)",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VI 기대효과

- 직무공헌도를 반영한 자격증 가점제도 운영으로 직무 전문성 제고
- 복지 분야 근무 유인으로 행정 직렬의 복지업무 기피현상 해소 및 복지업무 가용인력 확보

VII 향후계획

- 인사위원회 인사규칙 개정안 사전 심의 : 2015. 1월 중
- 인사규칙 개정 : 2015. 3월 중
- 변경 가점제도 시행 : 2016. 1. 1